

뉴질랜드에서
사업하기.



목차

내용	3
버들 핀들레이 (Buddle Findlay) 소개	3
뉴질랜드 소개	4
뉴질랜드에서 투자	5
비즈니스 설립	7
부동산 및 토지법	9
뉴질랜드에서 자금 조달	11
뉴질랜드 이민	12



버들핀들레이는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뉴질랜드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주 직면하는 법적 및 상업적 이슈들을 설명하기 위해 본 <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 및 뉴질랜드에서의 사업 안내 > 책자를 마련했습니다.

본 책자 출판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를 본 책자에 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정부 정책이나 사업 환경, 법률의 해석과 관행 등이 부분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니 사업과 투자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실 시에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보다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책자에 대한 내용과 그 외의 자세한 정보나 법적 조언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기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버들핀들레이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 또는 다음 이메일로 (bfmail@buddlefindlay.com) 연락 주세요.

“버들핀들레이는 복잡한 거래를 다루는 데 매우 노련하며 전문분야에 관한 내부 지원이 가능한 곳입니다. 주요 이슈를 명확히 설명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합니다.”

CHAMBERS ASIA-PACIFIC



버들 핀들레이 (Buddle Findlay) 소개

버들핀들레이 법무법인은 뉴질랜드의 상법과 공법 법률서비스를 선도하는 로펌으로 현재 오클랜드,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맥과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버들핀들레이의 대표변호사들과 직원들은 고객 및 고객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적이며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효과적이며 혁신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 및 유지하는 선도적인 법률사무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현 가능한 솔루션 중심으로 일하며, 고객에게 친근한 변호사로서의 명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이 있는 버들핀들레이는 뉴질랜드 법률시장에 에너지와 열정과 실용주의의 법률자문 제공을 기여합니다.

법인 소개

- 1895 년 설립
- 전국적인 업무와 밀접한 국제 네트워크
- 대표변호사 49명과 그 외 구성원 320명 이상
- 제반 기업법률자문 및 송무의 모든 분야에서 법률서비스 제공

파트너십

버들 핀들레이는 많은 해외 로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 및 시니어 선임의 전문 경험은 영국, 미국, 호주, 홍콩 및 싱가포르와 같은 여러 관할 구역의 주요 기업에서 근무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세계 각지의 주요 외국 기업과의 국경을 넘어서는 거래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저희는 견고한 국제 제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파트너와 관계의 넓이는 저희가 어떤 단일 회사나 공식적인 연합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과 비용 측면에서 적절한 고문을 추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버들 핀들레이는 아시아에 있는 파트너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많은 중국인 투자자들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 투자자만 아니라 유명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투자자도 포함됩니다.

저희는 파트너의 선호도와 요구를 계산해서 중국어, 광둥어와 한국어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업무분야

버들 핀들레이는 기업 및 공공 부문에 전문 조언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업 및 상업 법무
-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법/규제
- 금융/자본시장
- 헌법/행정법
- 공정 거래법 및 산업 규제
- 의료법
- 건설 - 부동산
- 고용, 근로자 건강과 안전 관련 법
- 조세 및 관세
- 테크놀로지 - 미디어 - 통신
- 기반 시설
- 소송 - 중재
- 도산 - 기업 회생
- 환경 및 자원 관리
- 지식재산권
- 원주민(마오리족)법
- 해외 투자 사무실 설립
- 조달
- 자산관리와 건축법
- 공법과 행정법(정부기관 관련)

뉴질랜드 소개

정치 체제

뉴질랜드는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는 입헌 군주제 헌법 국가로, 의회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총리가 정부 수장이며, 영국 연방 내 독립적인 국가로서, 찰스 3세가 국가의 수장입니다. 관례에 따라 왕과 뉴질랜드 내 대표인 총독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며,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부 장관들의 조언을 따르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선거제도는 혼합 의원 비례 선거제도(MMP: Mixed Member Proportional)입니다. MMP 제도는 독일 모델을 기반으로 한 비례 대표제의 한 형태로, 유권자들이 각각 정당 투표(국회에서 자신을 대표할 정치 당을 선택하기 위함)와 선거구 투표(지역 구역을 국회에서 대표할 개인을 선택하기 위함)를 행하는 제도입니다.

뉴질랜드는 독립적이고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국회가 있으며, 국회는 단원제(House of Representatives)로서 123석(지역구 65석, 마오리족 특별 지역구 7석 그리고 정당명부위원인 51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제의 총 의원 수는 해당 정당 당선자 수에 비례해 결정됩니다. 정당이 당선자 석수보다 많은 지역구 석수를 획득하면 비례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 총 의석 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총선거는 미리 예고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3년마다 열리며, 다음 선거는 2026년에 열릴 예정입니다.

역사적으로, 중도 좌파인 노동당(Labour)과 중도 우파인 네셔널당(National)이 큰 주요

정당입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작은 정당들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네셔널 당의 주도하에 New Zealand First 당과 Act 당이 함께 연합하여 이뤄진 연립정부이며, 현 총리는 크리스토퍼 럭스턴(Christopher Luxton)입니다.

경찰, 교육, 보건, 화재 및 사회복지는 중앙 정부가 통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는 쓰레기 수거 및 수도 공급 등의 지역 사회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경제

경제는 민간 기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상업 활동을 “공공재”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업 활동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0년대 초에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자산을 민간화 했습니다. 그 이후 광범위한 규제완화는 경쟁을 촉진하고 수많은 규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뉴질랜드의 규제 방침에 대한 접근방식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편이지만 소비자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모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986년에 제정된 상법, 공정거래법 및 1993년 소비자보호법과 같은 법률은 기업들이 반경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제는 전통적인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품은 여전히

뉴질랜드 전체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수출품에는 관광, 임업 제품, 공산품, 어류 및 원예 제품, 기계 제품이 포함됩니다.

법률 체제

뉴질랜드의 법률 체제는 영국 모델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영국과 뉴질랜드 판례법(관습법)은 오늘날까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뉴질랜드 법의 상당한 부분이 법률로 성문화 되었습니다.

법원 체계는 계층적이며 지방 법원 및 고등 법원에서 항소 법원 및 대법원까지 존재합니다. 2004년 1월 대법원이 창설되기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항소 법원은 영국 런던의 추밀원(Privy Council)이었지만 2004년 이후로는 사법권이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었습니다. 고용 관계 기관(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인권 재판소(Human Rights Review Tribunal), 환경 법원(Environmental Court) 및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와 같은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 법원도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고등 법원에서 감독 역할을 합니다.

뉴질랜드의 권리 장전법(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에 따라 대중은 인권과 자유를 보호받으며 정부 행위를 제한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인권법(Human Rights Act)은 특정한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방지합니다. 대중은 공공정보법(Official Information Act 1982), 또는 지방정부 공식 정보 및 회의법 1987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뉴질랜드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며 해외에서 배운 변호사도 많습니다. 이 소식통은 변호사들의 이해에 있어서 탄탄한 기술적인 기반을 칭찬했습니다.”

CHAMBERS ASIA-PACIFIC

뉴질랜드에서 투자 외국인 투자 규제

해외투자법(2005)은 외국인 및 관련자가 뉴질랜드에서 “중대한 사업 자산” 또는 “민감한 토지” (임산물 권리를 포함)에 투자하기 전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투자에 대해 의무적인 통보를 요구하고 다른 경우에는 자발적인 통보가 허용되는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 호출 제도도 있습니다.

이 법은 해외 투자에 부과되는 조건을 규정하고 규제 기관인 해외 투자 사무국이 그 조건의 준수를 감시하도록 합니다.

해당 법은 1996년 어업법의 조항과 결합하여 어종 할당량에 대한 특정 투자도 규제합니다. 어종 할당량 투자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한 투자

뉴질랜드에서 외국인 또는 그의 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업 자산에 대해 투자하기 앞서 반드시 OIO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투자 및 거래를 할 때 허가가 필요합니다:

- 뉴질랜드 법인("A")의 총 지분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A의 총 자산의 가치 (또는 A와 A가 25%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A의 자회사들의 가치를 합한 총 금액)가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지분 또는 대가의 가치, 또는 해당 사람 및 그 25% 이상의 자회사의 자산의 가치가 1억 뉴질랜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미 25% 이상의 지분 또는 통제 지분을 보유 중인 사람(예: 법인체)의 지분 또는 통제 지분을 해당 통제 한도(50%, 75%, 100%)로 증가시키는 경우
- 연간 90일 이상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그 제반 설립 비용이 1억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자산(예: 브랜드 및 기타 무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 경우(단일 거래 또는 연결된 일련의 거래로 인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가의 총 가치가 1억 뉴질랜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호주 투자가 및 뉴질랜드와 특정 무역 또는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한 국가(예가 들면 호주 및 싱가포르)의 특정 투자자에게는 다른 금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정의

‘외국인’이란: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 설립지가 뉴질랜드가 아닌 법인이나 뉴질랜드 법인(상장 발행인 제외) 중 외국인이 25% 이상 소유 또는 통제하는 경우

- 소유 또는 통제 테스트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충족하는 뉴질랜드 상장 발생자인 법인
- 외국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 또는 통제, 지배하거나, 법인의 25% 이상의 수익자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특정 파트너십, 비법인 합작 투자 또는 기타 비법인 단체, (신탁, 단위 신탁, managed investment (관리 운용 투자) scheme 또는 유한 파트너십은 제외)
- 해당 수요 또는 통제 테스트를 충족하는 특정 신탁, 단위 신탁, 관리 운용 투자 scheme 및 유한 파트너십.

“일반 거주자” 판단 여부는 복잡하며 투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 토지에 대한 투자의 경우 다른 국의 투자 유형과 비교해, 다른 “뉴질랜드에서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의 정의가 적용됩니다. 투자 종류와 관계없이요구되는 사항은 구체적이며, 단순히 영주권 상태만 갖추는 것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호주 및 싱가포르에서 온 외국인의 경우는 주거용 토지 및 관계 재산 관련하여, 그리고 호주에 한해서는 규제된 이익과 관련된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자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동업자

해외투자법은 외국인의 “동업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업자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수행하거나 그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명한 어떤 사람이나 외국인에게 지시를 받거나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모두 동업자에 해당합니다.

민감 토지 (sensitive land)의 조건

현재 다음과 같은 토지는 민감 토지에 해당됩니다.

- 면적에 관계없이 관할구 부동산 가액부 (District Valuation Roll)에 주거(R, Residential) 또는 라이프스타일(L, Lifestyle)로 분류된 모든 주거용 토지
- 총 면적이 5헥타르를 초과하는 비도시권 토지 (예를 들면 농업용 토지, 또는 사용 목적이 상업·산업·주거가 아닌 토지)
- 노경지는 농업, 원예 또는 벌, 가금류, 가축을 사육을 위목장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 도시 지역에 있고 상업적, 산업적 또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뉴질랜드의 특정 섬에 위치한 토지

- 해양 및 해안 지역
- 면적이 4,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다음과 같은 토지:
 - 호수의 일부
 - 사적지
 - 보존 목적을 위해 묶인 토지
 - 문화유산으로 규정되거나 문화지로 지정된 토지
 - 보호구역, 공원, 레크리에이션용 또는 공지로 제공되는 토지
 - 마오리 보유지로 지정된 토지.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외국인 투자 사무소에서 허가 절차를 주관합니다. 허가를 결정하는 부서는 주로 재무부 부장관(민감 토지 및 중요 사업 자산 관련 결정)과 토지정보부 장관(민감 토지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외국인 투자 사무소에서 허가 절차를 주관합니다. 허가를 결정하는 부서는 주로 재무부 부장관(민감 토지 및 중요 사업 자산 관련 결정)과 토지정보부 장관(민감 토지 관련 결정만 해당)이지만, 국익에 대한 평가를 요하는 투자의 경우, 신청 내용에 대한 (부) 장관의 결정과 별개로, 재무부 장관이 투자의 국익 위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서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결정권이 외국인 투자 사무소에 위임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투자하기 희망하는 거의 모든 외국인 (또는 동업자)는 OIO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감한 뉴질랜드 자산에 대해서는 법적 또는 형평법상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허가 및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계약상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외국인투자 사무소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법을 위반하지 않고 민감한 뉴질랜드 자산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결정 기간

모든 신청에 대해 법정 기간이 적용되나,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권리나 구제조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며 거래에 따라 10일부터 100영업일까지 다양합니다. 신청이 두 개 이상의 경로/테스트를 포함하는 경우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는 신청인이 정보 요청에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OIO에서 지정한 합리적인 시간" 내에서) 과장관(해당하는 경우)이 신청을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 포함되지만 "중단", "연장" 및 "예외"는 제외됩니다.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12월25일부터 1월15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합니다.

OIO의 결정 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OIO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해외투자법에 따른 동의/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해외투자국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비용은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 중인 관련 해외 투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사업 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에 대한 신청 수수료는 \$38,800뉴질랜드 달러이며, 민감한 토지에 대한 해외 투자에 대한 수수료는 \$68,200뉴질랜드 달러에서 \$146,200뉴질랜드 달러입니다. 만약 해당 해외 투자가 국가적 관심거래인 경우 추가 수수료로 \$83,700뉴질랜드 달러가 적용됩니다. 법적 비용은 별도입니다. OIO의 신청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OIO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처벌

외국인 투자 사무소(OIO)가 외국인투자법 이행 및 허가 조건 준수 여부를 감시합니다.

외국인투자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없이 외국인 투자 실행
- 법의 운영을 파기, 회피 또는 우회하는 행위
- 법에 따라 권한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제한, 방해 또는 기만하는 행위

이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의 경우 최대 12개월의 징역 또는 NZ\$300,000의 벌금
- 회사의 경우 NZ\$300,000의 벌금.

또한 다음과 같은 행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허위 또는 오해하기 쉬운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규제 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오도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최대 NZ\$300,000의 벌금)
- 합법적인 이유없이 법률, 규정, 관련 고지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최대 NZ\$100,000의 벌금).

본 법률을 위반하거나 정보 제출 통지에 따르지 않거나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본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련된 경우, 외국인 투자 사무소는 법원에 다른 조치들과 함께 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재산 처분 명령
- 민사 처벌 명령. 이 경우 벌금 액수가 개인의 경우 최대 NZ\$500,000, 기업의 경우 최대 NZ\$10,000,000, 또는 산출한 이득의 3배, 관련된 허가 조건 사항의 교정에 소요되는 비용, 허가 조건 위반과 관련된 손실액 지급 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비즈니스 설립

법인 설립 - 지배 구조

뉴질랜드의 영 연방 법률 전통의 결과로 영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 찾을 수 있는 기업 구조가 뉴질랜드에도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유한 책임 회사, 파트너십 또는 합명 회사 및 유한 합자 회사가 포함됩니다.

법적, 세무 및 상업적 사항이 투자자의 기업 구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인 지배 구조는 투자가 또는 소유주의 유한 책임, 사업의 규모와 성격, 뉴질랜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 세금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한 뒤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지배 구조와 상관없이 보험회사나 부동산 중개업과 같이 특정 유형의 사업을 설립하고자 할 시 본 안내책자에서 다루지 않은 특정 라이선스 및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 기업은 유한 책임 회사의 구조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유한합자회사법 (Limited Partnerships Act)이 도입된 이후로 특히 투자 펀드나 합작 투자를 위한 유한 합자 회사를 설립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은 뉴질랜드에서 다음과 같은 법인 구조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내 자회사(subsidiary) 설립
- 뉴질랜드내 지사(branch)을 설립하여 "해외기업"으로 등록
- 기존 뉴질랜드 회사 인수.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다른 법인 구조가 더 적합할 수 있으며 버블핀플레이에서는 이런 경우 가장 유리한 법인 구조에 대해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회사 설립

뉴질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원하는 법인명을 신청하고 (법인등기소의 승인 필요) 특정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자회사는 뉴질랜드 내 등록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자회사는 또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이사가 있거나 집행 국가에 거주하고 해당 집행 국가에 등록된 회사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호주만 집행 국가에 해당됩니다).

해외 모회사로부터 독립된 주체로서, 자회사는 모회사 주주와도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설립된 회사의 주주는 (무한 책임 회사로 특별히 설립되지 않은 한) 자동으로 유한 책임을 집니다.

주주 투표권의 25% 이상이 외국에서 설립된 해외 기업의 자회사, 해외 기업 또는 뉴질랜드에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소유한 뉴질랜드 대기업은 법인등기소에 기업 운영과 관련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법인의 뉴질랜드 지사 설립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해외 법인은 영업일 10일 이내에 뉴질랜드 법인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법인명 사용 및 관련 행정 서류 제출을 위해 법인등기소의 승인을 얻는 것을 포함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회사 및 각 이사에게 최대 NZ\$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와 달리 지사는 해외 회사와 별도의 법인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이사가 해외 회사 이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특정 해외 기업(예를 들어 해외 대기업의 경우)은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수

기존의 뉴질랜드 법인을 인수하려는 회사는 세무 및 상업적 측면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법 (Overseas Investment Act), 인수·합병 규정 (Takeover Code) 및 상법(Commerce Act)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내서에 관련 법률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9~11페이지].



파트너십 (합자 회사)

파트너십법(Partnerships Law Act 2019)에 정의된 파트너십이란 이익 창출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또는 법인 간에 존속하는 관계를 지칭합니다.

특정 벤처가 파트너십인지 여부는 설립 문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파트너십의 핵심 특징은 각 파트너가 파트너십 채무와 손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트너십은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및 파트너십의 운영을 규율하는 규칙을 설정하는 파트너십 계약에 의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유한 합자 회사

2008년 뉴질랜드 정부가 유한합자회사법을 제정했습니다. 유한 합자 회사는 현대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식 가능한 구조로서, 뉴질랜드 벤처 캐피털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유한 합자 회사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하이브리드 성격입니다. 유한 책임 회사와 같이 유한 책임 파트너는 유한 책임의 보호를 받지만 전통적인 파트너십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종종 “flow through” 또는 “세금 투명성”이라고 불립니다).

유한 합자 회사는 법인등기소에 등록해야 하며 파트너십 계약서와 최소한 무한 책임 파트너 1인과 별도의 유한 책임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파트너십 계약서는 회사 주주 간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므로 무한 책임 파트너의 세부 사항만이 공개되고 유한 책임 파트너인 투자자들의 세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유한 합자 회사 구조는 많은 뉴질랜드 사업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특정 유형의 합작 투자펀드 등은 세금 혜택을 뿐만 아니라 공시 요구사항 등의 감소로 인해 준수 비용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합작 투자

합작 투자(joint venture)는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특정 사업에 자본 및 기술 등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작 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각 합작 회사 또는 투자자가 소유주인 유한 책임 회사
- 파트너십
- 유한 합자 회사
- 비법인 합작 투자.

합작 투자 구조와 경영에 관한 사항은 합작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합작 투자 구조가 법인이라면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서에, 파트너십이나 유한 합자 회사이면 파트너십 계약서에, 그리고 비법인 합작 투자의 경우에는 합작 투자 계약서에 자세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그 외의 지배 구조

경우에 따라서 위에 설명을 드린 법적 구조 외에 다른 구조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하시길 원하는 경우에는 자선 신탁(charitable trust) 또는 비법인 단체(unincorporated society)가 알맞은 구조이며 멤버들이 협동을 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협동 기업이나 협동 단체 등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사업 설립 시에는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 관리되는 투자 펀드(managed investment scheme) 또는 이 외의 구조가 가장 적합할 수 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규제

외국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은 외국인 또는 그의 관계자들이 뉴질랜드의 중요 자산 또는 민감 토지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외국인 투자 규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버들 핀들레이는 파트너 수준과 시니어 변호사들 사이에 넓고 깊은 인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조직되어 효율적이며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이 복잡하고 정교한 사안을 다루는 데 뛰어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CHAMBERS ASIA-PACIFIC

부동산법과 토지법

아래는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에 유용한 뉴질랜드 부동산 및 토지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토지 소유권 체계

뉴질랜드는 토렌스(Torrens)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토지 등록 및 이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토지 소유에 대한 공적 등록부를 중심으로 하며 호주, 영국 및 싱가포르를 포함한 여러 다른 국가에서 사용됩니다. 토렌스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매수인이 공적으로 등록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법적 효력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이전 및 양도 저당, 지역권, 경고 및 토지에 대한 기타 법적 이익의 등록을 포함하여 토지와 관련된 모든 거래와 토지 면적은 소유권 등기부(Record of Title)에 등재되며 전자 등록부에 보관합니다. 토지정보기관(Land Information New Zealand)에서 제공하는 LandOnline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 부동산 에이전트 외 다른 전문가가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부를 검색하여 유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부에서 해당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매수인이 공인 등록부의 보증된 검색을 요청하면 해당 토지와 관련된 소유권 등기부의 사본을 받게 됩니다.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이 명시되도록 국가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실소유주 확인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으며 비용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와이탕이 조약 & 마오리족의 토지 소유

와이탕이 조약은 1840년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영국 왕실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원래 영국 정착민들에 의한 뉴질랜드의 평화로운 식민지화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마오리족이 자신들의 땅과 자원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권에 의한 연이은 땅 몰수와 마오리족 땅 소유가 점차적으로 분산되어 조약 자체가 마오리족의 이익을 더 이상의 권리 침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왕권에 의해 가져간 마오리의 땅과 자원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자주 언급되게 되었습니다.

조약의 공식적인 채택과 조약에 따른 보장의 충족을 요구하는 압력에 대응하여 뉴질랜드 정부는 1975년에 '와이탕이 조약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토지와 자원 상실과 관련된 마오리의 주장을 조사하고 듣기 위한 행정 기관인 와이탕이 법정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전역의 다양한 마오리 부족들 사이에서는 '와이탕이의 조약' 1975에 따른 다수의 청구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는 국가 또는 공기업(Crown Trading Entities)이 소유하거나 소유했던 토지나 자산을 매입할 때 가능한 마오리 토지 소유권 주장과 배성요구 가능성에 대해 주의해야 하며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와이탕이 조약에 따른 잠재적인 마오리족의 토지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 등기부에 명시됩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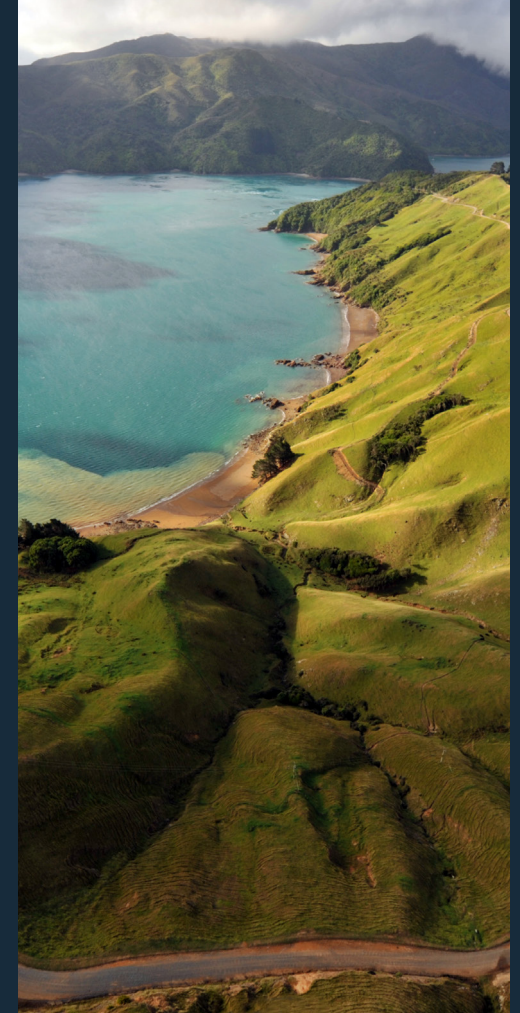
부동산 매매계약서

뉴질랜드에서의 부동산·토지 매매 계약 및 특정 토지 처분에 대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양자의 합법적 대표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변호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중개업자의 신탁 계정에 계약금의 일부 (보증금)를 지불하게 되고 이 돈은 계약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무조건부 계약이 성립 될 때 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지불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특정 전제 조건을 포함하거나 무조건부 계약일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계약당사자 양방이 모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조건의 혜택을 받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규정된 시간 내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경우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중한 매수인은 계약 체결 전에 (적절한 경우 전문가를 고용하여) 부동산·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거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체결 후에 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은 소유권 등기부 조사, 건물 검사 보고서, 자원 관리(Resource Management) 사안 검토, 용자 승인 및 임대



계약 조사(임대된 상업 또는 산업용 건물과 관련하여) 등과 관련됩니다.

상업·산업 관련 건물 임대

뉴질랜드의 모든 임대차 계약은 표준 양식의 상업 임대차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현상을 통해 작성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널리 사용되는 표준 상업 건물 임대차 계약서(Property Council of New Zealand), 그리고 좀더 간단한

오클랜드지방변호사회(ADLS) 표준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이 임대료 이외에도 다양한 비용(운영비 또는 부동산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는 일반적인 지출에는 지방 정부세, 보험료 및 내부 유지 보수 비용이 포함됩니다. 일부 임대차 계약은, 특히 복수의 임차인이 있는 건물이나 쇼핑몰의 경우, 부동산 소유, 운영 및 관리에 소요하는 총 비용의 일부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업 임대차 계약은 다년간 계약이며 대개 갱신 기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임대료 검토 조항을 넣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계약에는 종종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검토 시 임대료가 줄거나 계약 시작일 당시 임대료 이하로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상업 임대(특히 ADLS 표준 임대차 계약 최신 개정본)의 경우 긴급 상황(예, 지진 또는 최근의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정부 규제)로 시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인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Sublease)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가 이전되기 전에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을 이전할 경우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신, 구 임차인과 보증인(있을 경우)이 모두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건물 규정과 지진 문제

뉴질랜드 건축법(Building Act 2004)은 뉴질랜드의 모든 건물과 모든 건물 시공 시 준수해야 하는 법률입니다. 건축법은 지방 정부 및 시의회에 건축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고 건물의 안전과 위생, 적절한 화재 탈출구 경로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캔터베리 지역에 영향을 미친 주요 지진 (2010년 및 2011년)과 말버러 및 웰링턴 지역의 지진 (2013년 및 2016년)으로 인해 지진 문제가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건물들은 다음 몇 십년 안에 (현재 그렇지 않은 경우) 최소 지진 기준에 적합하도록 재건이 될 것입니다. 의무적인 적용 기간은 건물의 위치와 해당 위치에서의 지진 발생 가능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건축법과 별개로, 고위험 지진 위험 지역에서는 부동산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지진 문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만약 임대 공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임차인이 정부/지방 당국 통제 때문에 임대 공간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임대 공간 자체에 피해가 없는 경우), 임대 조항의 적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임차인들은 특히 블루칩 및/또는 앵커 임차인들을 위해 건물에 대한 최소 지진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기준에 대한 규제 변경이 미래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에서는 그 시기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혁신 및 고용부는 2020년 11월에 지진 위험 작업 그룹 초기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건축 산업 및 일반 대중과 함께 건물 성능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된 설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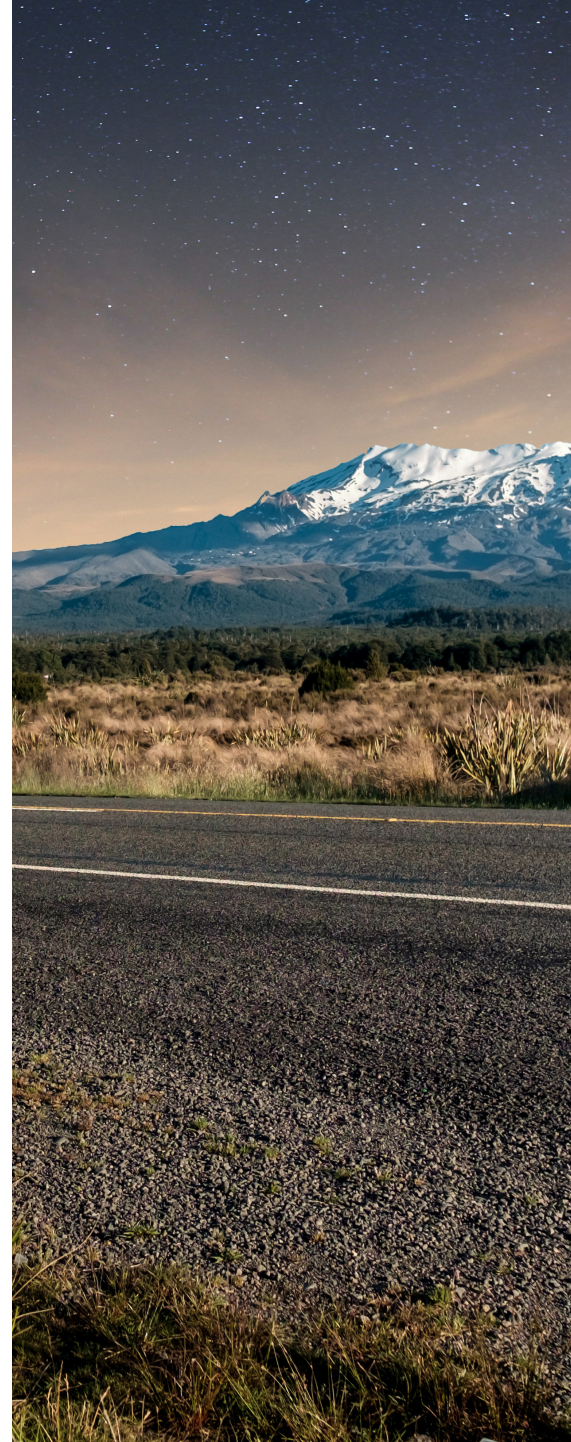
환경계획법

자원 관리법1991

현재 뉴질랜드의 주요 환경 및 계획 법률인 자원 관리법 1991(RMA)의 목적은 자연 및 물리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자원관리법은 토지, 수자원, 해안 및 대기 자원을 포함한 모든 자연환경 및 물리 자원의 사용과 개발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원관리법은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모든 개인은 어떤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개선하거나 완화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통제관련 사항은 지역 자치 단체인 지방 자치단체 또는 지방 자치 단체(도시 및 지구 자치단체)에서 관리되는 공적으로 통지된 법적 계획 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 활동은 자원관리법을 토대로 토지 이용 및 구획 승인, 그리고 해안, 수문 및 배출 허가 형태의 자원 허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원관리법에는 벌금 및 집행 규정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 및 고위 경영자가 회사의 행위 또는 누락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특정 규정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 자원관리법을 폐지하고 여러 새로운 법률로 대체되는 법안을 도입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효과 중심' 시스템(현재의 '영향 중심' 시스템 대신)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 체계의 일부 원칙을 상당 부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과 관련 세부 내용은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체제가 완전히 시행되기까지 긴 전환 기간(최대 10년 정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자금 조달

뉴질랜드는 국내 또는 해외 차용 또는 대출에 대한 특정 규제 없이, 국내외에서 자금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뉴질랜드는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증권 발생과 관련된 법률을 제외하고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의 대여나 대출에 대해 특정 승인 또는 유사한 규제 제한 또는 통제가 없습니다. (증권 발생과 관련된 법률을 제외하고는, 이는 12페이지쪽에 개요가 제공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
- 비은행 예금수취기관을 포함한 금융 회사
- 도매 시장
- 채권 자본 시장.

뉴질랜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이 높은 경우, 무담보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은 차용자의 재산을 담보로 요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나 기타 비개인 재산을 담보로 하거나, 개인 재산 담보법(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에 따라 현재와 이후에 취득한 모든 개인 재산 또는 특정 개인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대출 서류는 일반적으로 국제 관행과 일치합니다. 법인이 대출 기관과 금융 계약을 체결하려면 회사법(Companies Act 1993)에 따라 이사 및 주주가 법적으로 필요한 법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출을 제공하기 앞서 대출 기관은 보통 회사법 관련 요건의 준수 및 필요한 법인 권한부여를 확인하는 내용, 그리고 때로는 변호사의 의견을 첨부한, 이사가 작성한 재무 상태(지불 능력 등) 증명서에 의존해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뉴질랜드에는 채권 자본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고 일반적으로 대기업만 이용합니다.



뉴질랜드 이민

이민

뉴질랜드나 호주의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이 뉴질랜드에서 살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래에 뉴질랜드 이민 절차와 정책을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민 규정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의 이민 규정 또한 자주 그 승인 조건과 심사 기준이 변경되므로 신청하시기 전에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각종 양식과 안내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호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뉴질랜드로의 입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기술이민 카테고리 영주권을 포함한 특정 비자 발급을 연기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외 지역에서의 임시 체류 비자 신청과 격리 면제 여행 지역 적용을 일시 중단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뉴질랜드 정부는 국경 통제를 철회하고 관광객 및 학생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7월 4 일에는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를 포함한work visa카테고리의 신청을 다시 허가하였습니다.

투자 및 사업 이민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며 뉴질랜드 비즈니스에 투자를 원하는 분이거나(투자자), 뉴질랜드의 기존 비즈니스를 매입하거나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사업가) 아래 두 가지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

2022년 7월 28일 이전에는 뉴질랜드에서 특정 유형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는 개인들은두가지 카테고리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 두 가지 카테고리의 승인 조건에는 기본적인 건강과 인성 (good character)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래 카테고리의 비자 (투자자 1 및 투자자 2 비자)에 대한 신청은 2022년 7 월 28일부로 새로운 지원자는 더이상 받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베스터 1 카테고리: 1,000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을 기업 주식, 채권 또는 국채에 최소 3년간 투자하는 경우 이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자는 3년의 투자기간 중 마지막 2년 동안 매년 44일 이상을 뉴질랜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250 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을성장형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인베스터 1 카테고리 이민 신청자는 뉴질랜드 거주 기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즉, 총 3 년의 투자 기간 기준 최소 88일 거주).
- 인베스터 2 카테고리: 4년 동안 허용된 뉴질랜드 투자 부문에 투자할 최소 300 만 뉴질랜드달러의 자금을 보유한 경력이 있는 사업가일 경우 인베스터 2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점수제로 신청자의 자격을 평가하고 최소 3년의 인정된 사업 경력과 기본 영어 능력 그리고 신청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매년 최소 146일을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투자 자금의 75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을 특정 성장 지향적 투자 부문에 투자한다면, 뉴질랜드에서 요구되는 거주기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즉, 총 4년 기준 최소 438일의 거주).

뉴질랜드 정부는 2022년 7월에 뉴질랜드의 투자자 비자 조건을 변경했으며, 2022년 9 월 19일에 개시된 새로운 액티브 투자 플러스 비자 (Active Investor Plus Visa) 카테고리가 변경 사항에 포함 됩니다. 신청자는 4년 동안 뉴질랜드 내에서 최소한 1,500만 뉴질랜드 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평균 허용 가능 투자를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4 년의 투자 기간 동안 최소한 117일을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 건강 및 품성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지정 자금과 거래가 합법적임을 확인하기 위해 투자 기간동안 18개월, 36 개월 및 48개월시점에투자점검이 이뤄지게 됩니다.

기업 이민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를 매입하거나 설립하려는 사람들은 최대 3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워크 비자(Entrepreneur Work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최소 10만 뉴질랜드달러를 사업에 투자해야 하며,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기업 워크 비자 점수 제도에 따라 120점 이상을 받고, 건강과 인성, 영어 요건을 충족해야 워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고도의 기술혁신이나 수출 잠재력을 지닌 과학 또는 정보통신기술 사업에 대해 10만 달러 투자 조건의 면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초기 12개월간 유효하고, 비즈니스가 설립된 이후에는 2년 동안 추가로 워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수출 잠재력을 지닌 고성장 혁신 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기업가는 Entrepreneur Residence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ntrepreneur Resident Visa는 계속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제한 없이 뉴질랜드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합니다.

- 2년 옵션: 신청자가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수하여 최소 2년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뉴질랜드에 기여를 하는 등 그 외의 요건을 충족시켰을 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워크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본 옵션 하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옵션(패스트 트랙): 기업 워크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좀 더 빠른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적어도 50만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고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풀타임 직원 3명 이상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격 충족 시 기업 비자를 발급받고 나서 6개월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글로벌 임팩트

에드먼드 힐러리 펠로우십(Edmund Hillary Fellowship)의 회원인 기업인과 투자자는 글로벌 임팩트 워크 비자(Global Impact Work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가 있으면 뉴질랜드에서 최대 3년간 거주하고 일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드먼드 힐러리 펠로우십을 2년 반 동안 유지하고 펠로우십의 지원이 지속되는 경우 30개월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건강과 인성, 적합성(Fit and Proper Person)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이 요구되며, 본인의 뉴질랜드 생활 자금으로서 NZ\$36,000를 보유해야 합니다.

일반취업비자 및 체류 비자

다수의 취업 및 거주 비자 옵션이 해외 개인과 그 고용주에게 제공됩니다. 몇 가지 주요 일반 범주가 아래에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술 이민

기술 이민 영주권 비자는 뉴질랜드 내에서 확실한 시장의 요구와 기회를 충족시킬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영주권 획득 경로로, 포인트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민성은 신청자에게 먼저 관심 표명서(EOI)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포인트에 기반하여 평가됩니다. 현재 이민성은 180 포인트 이상을 획득한 EOI만을 선택하고, EOI가 선택되면, 이민성은 해당 개인에게 기술 이민 카테고리 영주권 신청을 하도록 초청합니다. 2023년 10월 9일부터는 기술이민 카테고리 영주권 비자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예정이며, 새로운 포인트 시스템, 기술 이민 직업 또는 취업 제안 요건, 허용되는 신청 수 및 처리 시간, 그리고 기술이민 카테고리 임시 비자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9일부터는 기술 이민 카테고리 영주권 비자 신청을 위해 6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포인트 시스템에 따라 지원자는 뉴질랜드 직업 등록, 자격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직업 또는 취업 제안으로 부터 3~6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중간 임금의 1.5배 이상을 벌어들이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지표에서 포인트를 두 가지 이상 조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의 숙련 노동



수는 없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기술 노동 업무를 수행한 때 해 1포인트씩, 최대 3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기술 노동 업무 경력에서 얻은 포인트는 뉴질랜드 직업 등록, 학벌 자격 또는 소득에서 얻은 포인트와 조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민 카테고리 영주권 비자는 5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자는 영어 능력, 건강 및 품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 영주권 (Work to Residence)

취업 영주권 비자는 최대 2년반 동안 워크 비자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자입니다. 아래의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건강과 인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인증된 고용주 근로 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는 2022년 7월 4일에 AEWV비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인증된 고용주는 자신의 핵심 사업 분야에서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으로, 신청자는 55 세 이하여야 하며, 인증된 고용주로부터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의 정규 직원 고용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 조건으로 최소 29.55 뉴질랜드 달러의 임금을 받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직무는 고용주의 주요 사업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하며, 고용주가 직원의 작업 성과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23년 11월부터는 영주권 획득 경로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AEWV비자의 최대 연속 체류 기간이 5년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가 AEWV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 이전에 뉴질랜드 외부에서 12개월을 보내야 합니다. AEWV 비자의 최대 유효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 **재능 (예술, 문화 및 스포츠) 비자 (Talent (Arts, Culture and Sports) Work):** 예술, 문화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서 신청자는 55세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자로서, 현재까지도 탁월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존재가 해당 분야에서 뉴질랜드의 위상이나 참가 기회를 높일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재능과 연관된 분야에서 명성을 지닌 뉴질랜드 기관/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주거 및 재정 지원을 하는 인정할 만한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 **장기 기술 부족 목록(LTSSL):** 장기 기술 부족 근로 비자는 2021년 10월 31 일자로 새로운 지원자는 받지 않으며, AEWV비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장기 기술 부족 목록 (LTSSL) 에 포함된 직업군에 full time 취업 제안을 받았어야 했고, 해당 직무의 명시된 사양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필요한 근무 경험과 관련 직업 등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장기 기술 부족 목록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부족을 가진 분야를 식별되며, 매년 검토되었습니다. 장기 기술 부족 목록의 사본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에 있으며, 기술 이민의 EOI 를 제출하고 싶을 시 장기 기술 부족 목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취업영주권비자 중 하나를 2 년 이상 소지하고, Work Category 에 나열된 다른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술 근로 비자

필수 기술 근로 비자는 2022년 7월 4일에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도록 폐쇄되었으며, 이에 대체하여 인증된 고용주 근로 비자가 도입되었습니다. 필수 기술 근로 지침은 뉴질랜드 고용주가 뉴질랜드 내에서 고용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외에서 일시적으로 노동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노동자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근로 비자는 최대 3~5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효했으며(특정 직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다름), 영주권 획득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이전에 이민국은 직업의 호주 및 뉴질랜드 표준 직업 분류(ANZSCO) 기술 수준과 연봉을 결합하여 해당 개인이 낮은, 중간 또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이민국이 기술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중간 임금 한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원자는 중간 임금 이상 또는 중간 임금 미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신청자는 뉴질랜드 내에서 제안된 역할과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만약 해당 직책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직업 등록을 획득해야 했습니다.



특정 목적 또는 이벤트를 위한 비자 사업체 이전 이민

특정 목적 또는 이벤트가 뉴질랜드 내의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뉴질랜드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되면, Specific Purpose or Event 목적을 위해 신청자는 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 또는 이벤트에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신청자는 특정 목적 또는 행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목적 또는 이벤트는 2023년 1월과 2월에 발생한 극한 기상 사건으로 인한 복구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신청자도 포함됩니다). 필요한 경우, 특정 목적이나 행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및 요구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 및 인품 요건 역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 목적 또는 이벤트”라고 인정된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월 및 2월의 극한 기상 사건피해 복구 작업 지원
- 건설한 뉴질랜드 기업 또는 외국 회사의 뉴질랜드 자회사에서 단기 파견 job offer 를 받은 고위직 또는 전문 기업인
- 임원, 고위 관리자 또는 전문 인력으로서 뉴질랜드로 사내 진출된 기업인
- 뉴질랜드 내 Active Investor Plus Visa 또는 Parent Retirement Resident Visa 신청 심사중인 주 신청자.

사업체 이전 이민

위에 설명된 여러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중 사업의 중요한 인력으로서 뉴질랜드에 주재하게 될 직원은 사업체 이전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관련 비즈니스 및 신청인에 관한 여러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이민 성은 신청자가 비즈니스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이며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에서 해당 사업의 뉴질랜드 이전을 지원하는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전 후 24개월 동안 이전하는 사업체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시민권

시민권법(Citizenship Act 1977)에 따라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민법에 따라 뉴질랜드에 무기한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 보유(예: 영주 거주 비자를 소지한 경우)
- 신청 직전 5년 동안 최소 1,350일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
- 해당 5년간 매년 적어도 240일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
- 인성 증명
- 충분한 영어 실력 그리고 뉴질랜드 시민권에 수반되는 책임과 권리 의식
- 시민권을 부여 받고 뉴질랜드에 영구 거주할 의사 보유.

이민 상담·조언

공인이민법무사법(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에 의거, 뉴질랜드에서 이민에 관한 조언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은 이민 컨설턴트나 허가 조건이 면제된 사람들(예를 들어 변호사)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당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이민 컨설턴트가 제출하는 신청서는 받지 않습니다.

향후 비자 변경 사항

뉴질랜드 정부가 기술 직업군 영주권 비자와 AEWV비자 등 여러 비자에 대한 정책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 2023년 10월 9일부로 기술 직업군 영주권 비자에서 요구했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들을 위해 간결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영주권 신청이 불가한 이들을 위해 2023년 11월부터 AEWV 비자 소유자가 뉴질랜드에 머물수 있는 최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AEWV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뉴질랜드 밖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합니다.

BUDDLE FINDLAY

AUCKLAND 오uckland

HSBC Tower, 188 Quay Street, PO Box 1433

Auckland 1140, New Zealand

DX • CP24024 P • 64 9 358 2555

WELLINGTON 웰링턴

Aon Centre, 1 Willis Street, PO Box 2694

Wellington 6140, New Zealand

DX • SP20201 P • 64 4 499 4242

CHRISTCHURCH

크라이스트처치

83 Victoria Street, PO Box 322

Christchurch 8140, New Zealand

DX • WX11135 P • 64 3 379 1747

buddlefindlay.com

